

[러시아] 2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검역) 러시아연방 국경 검문소에서 위생검역관리 규정 개정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No.223 (2017.2.21)

- 러시아연방 정부는 결의 No.500 (2011.6.29)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국경 검문소 위생검역관리 규정'에 다음 내용의 제28(1)항을 첨가함
 - 규정 제26항~제28항에 명시되어있는 결정(규제제품의 반입 허가 또는 금지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시에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Rospotrebnadzor)의 공무원과 세관기관의 행정업무는 전자형식으로 수행 가능함
 -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능 강화된 전자서명 사용
 - 부처간 전자 상호작용 통합시스템 사용
- 러시아에서 위생검역관리는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과 세관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은 전문 설비가 구비되어있는 특별검문소(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검문소 제외)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국가위생감독(관리)을 받아야 하는 통합상품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상품에 대해 위생검역관리를 시행하며, 검문소(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검문소 제외)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규제상품, 운송수단, 조업 시 채취된 수생생물자원과 이것으로 생산된 어류제품 및 기타제품에 대해 위생검역관리를 시행함
 - 세관기관은 특별검문소에서 규제상품(개인 반입하는 규제상품, 운송수단, 조업 시 채취된 수생생물자원과 이것으로 생산된 어류제품 및 기타제품 제외)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검문소에서 규제상품 및 운송수단에 대해 위생검역관리를 시행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국가위생감독(관리)을 받아야 하는 통합상품목록에 따르면, 식품도 이에 해당함
 - 식품은 식용에 적합한 자연 또는 가공 형태의 제품을 말하며 GMO 제품도 포함됨 (HS코드 제2류~제5류, 제7류~제25류, 제27류~제29류, 제32류~제34류, 제35류)

2. (검역) 학술적 목적의 토양 러시아 반입 규정 수립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No.180 (2017.2.14)

- 러시아연방 정부는 결의 No.180에서 학술적 목적의 토양 반입 규정을 수립함
- 학술적 목적의 토양 반입은 러시아 농업부에서 승인한 양식에 따라 학술연구·교육기관의 기관장이 동식물검역국에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학술연구·교육기관에게 허가됨. 이러한 학술연구·교육기관의 정관 목적은 학술활동 및(또는) 과학기술 활동을 실현하는데 있음
- 신청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동식물검역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동식물검역국의 공식 사이트 또는 통합포털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가능함
- 신청서 기재 사항: 토양의 원산지국가, 샘플의 양 및 수, 포장 종류, 토양에 유해생물체 부재에 관한 정보 또는 러시아연방에서 유해생물체로 알려진 생물체나 검역 대상이 아닌 생물체의 존재에 관한 정보, 토양의 학술(과학)연구 시행 장소
- 토양 반입 허가 결정문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반입 토양의 양 및 포장이 신청서에 명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연방 국경검문소에 설치된 식물위생관리소 또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식물검역소가 설비되어있는 기타 장소들에서 동식물검역국에서 진행
- 본 결의는 학술적 목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에서 러시아연방으로 반입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정부 결의 No.180은 2017년 2월 16일 법률정보 공식인터넷포털에 공시됨

3. (검역) 장기간 러시아에 동물성 생산품을 수출하지 않은 제3국 공급업체에 대한 조치

* 출처 : 동식물검역국 지령 No.FS-NV-7/1988 (2017.2.2)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규제상품의 생산, 가공, 저장에 종사하는 업체 및 개인 명단(이하 '제3국 업체명단'이라 함)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의 규제화물 공급 실태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제3국 업체명단에 포함되어있는 일부 업체들이 장기간 또는 전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2017년 2월 2일 동식물검역국은 18-36개월 동안 규제상품 수출이 부재한 업체에 대해 제3국 업체명단에 명시된 상태를 "수출 부재로 중단" 상태로 변경하기로 함
- 제3국의 수의감독기관에 의한 업체 감독 및 동식물검역국에 제출하는 확인서 분석 결과에 따라 대러 수출은 재개될 수 있음
- 3년 이상 동물성 생산품을 러시아에 공급하지 않는 업체들은 제3국 업체명단에서 삭제될 것임
- 2017년 2월 15일 동식물검역국은 18-36개월 동안 규제상품 수출이 부재한 업체에 대해 제3국 업체명단에 명시된 상태를 "수출 부재로 중단" 상태로 변경하기로 한 지령 No.FS-NV-7/1988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 지령 취소 결정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는 일부 공급업체들은 지령 내용에 해당하

는 동물성 생산품의 공급이 금지된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있으니 숙지하기 바람

4. (검역) 검역식물위생소독확인서 양식 승인

* 출처 : 러시아 농업부령 No.587 (2016.12.26), 컨설턴트 플러스 (2017.2.10)

- 러시아 농업부령 No.587에 의해 검역식물위생소독확인서 양식이 승인되었고 2017년 2월 6일 러시아 법무부에 등록됨
- 검역식물위생소독확인서 기재 사항: 주문자에 관한 정보, 규제대상(규제제품)의 명칭, 작업실시장소의 주소, 작업종류 등
 - 규제대상의 경우, 확인서에 규제대상의 규모, 살충제, 농도, 노출(시간), 대상/주변 환경 내부 온도, 소독 시작 및 종료 시간/날짜, 가스제거 시작 및 종료 시간/날짜, 소독 대상의 이용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함
 - 규제제품의 경우, 확인서에 발송인, 수령인, 고지문 발송 주소, 작업실시장소, 소독 대상, 소독된 제품의 수량, 운송수단, 목적지, 소독방법, 살충제, 농도, 노출(시간), 제품 온도, 소독 시작 및 종료 시간/날짜, 환기 시작 및 종료 시간/날짜, 규제제품 이용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함
- 2014년 7월 21일자 식물검역연방법 No.206-FZ에 의하면, 소독 시행 권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개인사업가가 다음의 경우에 검역식물위생소독을 실시함
 - 규제제품, 규제대상을 러시아연방으로 반입출하는 경우
 - 검역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식물위생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식물검역분야에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규제제품의 검역식물위생소독 실시 명령이 내려진 경우
 - 규제제품이 병해충에 의해 감염 및/또는 오염되었을 시에 규제제품의 소유주가 검역식물위생조치로서 규제제품의 검역식물위생소독을 선택한 경우

5. (관세)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에 따른 추잉캔디 분류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No.17 (2017.2.7)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관세동맹의 관세법 제52조 제7항에 의거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상품분류체계(HS코드)에 따라 추잉캔디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결정함
- 추잉캔디는 추잉 컨시스턴시(점조도)가 있는 설탕과자를 말하며, 설탕 및(또는) 설탕시럽과 겔화제(gelling agents)로 제조된 것으로 지방성분 및(또는) 과일즙 및(또는) 식물추출물 및(또는) 착색제 및 향미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상품분류체계 해설의 기본규정에 따라 HS코드 1704 90 650 0으로 분류
- 본 결정은 공보게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

6. (관세) 관세특혜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원산지 상품 목록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8 (2017.1.13)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원산지의 상품 목록을 승인하고, '관세동맹(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통합관세율 규제에 관한'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130 (2009.11.27)을 개정함
- 결정 No.130 제3항에 명시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서 생산, 반입되는 상품 목록'이라는 표현을 '2017년 1월 13일 유라시아경제연합 이사회 결정 No.8에 의해 승인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원산지의 상품 목록'으로 교체함
- 결정 No.130에 대한 별첨 4를 삭제함
- 본 결정 No.8은 공보게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발효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130에 의해 승인된 개발도상국 목록에 따르면,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은 총 103개국이며 한국도 포함되어있음
- 최빈개도국은 총 50개국임

I.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원산지 상품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품명
02 (0203, 0207 제외)	육과 식용설육
03 (0305 제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철갑상어 및 연어류, 그 어란은 제외함)
04	유제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6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식물의 부분, 절화와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및 멜론의 껍질
09	커피, 차, 마테, 또는 파라과이 차, 향신료
1006	쌀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2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및 곡물, 공업용 및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천연 락(lac),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5 (1509, 1517 - 1522 00 제외)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및 식물성 납
16	육류,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801 00 000 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함)
1802 00 000 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
20 (2001 10 000 0, 2009 50, 2009 71, 2009 79 제외)	채소, 과실,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가공품
2103	소스 조제용 제품과 조제한 소스, 가미제 및 혼합조미료, 겨자의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 및 브로스, 수프 및 브로스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5 (2501 00 91, 2529 21 000 0, 2529 22 000 0 제외)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II.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시에 관세특혜가 제공되는 최빈개도국 원산지 상품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품명
01	살아있는 동물
02 (0203 11 100 9, 0203 11 900 9, 0203 12 110 9, 0203 12 190 9, 0203 12 900 9, 0203 19 110 9, 0203 19 130 9, 0203 19 150 9, 0203 19 550 9, 0203 19 590 9, 0203 19 900 9, 0203 21 100 9, 0203 21 900 9, 0203 22 110 9, 0203 22 190 9, 0203 22 900 9, 0203 29 110 9, 0203 29	육과 식용설육

130 9, 0203 29 150 9, 0203 29 550 3, 0203 29 550 9, 0203 29 590 9, 0203 29 900 3, 0203 29 900 9, 0207 제외)	
03 (0305 20 000 0, 0305 31 000 0, 0305 32 110 0, 0305 32 900 0, 0305 39 500 0, 0305 39 90, 0305 41 000 0, 0305 52 000 0, 0305 53, 0305 54 900 0, 0305 59, 0305 63 000 0, 0305 64 000 0, 0305 69 100 0, 0305 69 300 0, 0305 69 700 0, 0305 71 900 0 제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04	유제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6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식물의 부분, 절화와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및 멜론의 껍질
09	커피, 차, 마테, 또는 파라과이 차,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2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및 곡물, 공업용 및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천연 락(lac),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5 (1517, 1518 00, 1521, 1522 00 제외)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및 식물성 납
16	육류,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1701, 1702 20 900 0, 1702 90 710 0, 1702 90 750 0, 1702	당류와 설탕과자

90 790 0, 1702 90 950 0, 1703 90 000 0, 1704 제외)	
18 (1806 10 200 0, 1806 10 300 0, 1806 10 900 0, 1806 31 000 0, 1806 32, 1806 90 제외)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1901, 1902, 1903 00 000 0, 1904, 1905 제외)	곡물, 고운가루, 전분 또는 우유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2001 10 000 0, 2009 50, 2009 71, 2009 79 제외)	채소, 과일,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가공품
21 (2101, 2102, 2105 00, 2106 90 200 0, 2106 90 300 0, 2106 90 510 0, 2106 90 550 0, 2106 90 590 0, 2106 90 920 0, 2106 90 980 1, 2106 90 980 2, 2106 90 980 4, 2106 90 980 5, 2106 90 980 9 제외)	각종 조제 식료품
22 (2201, 2202, 2203 00, 2204 10, 2204 21, 2204 22, 2204 29, 2205, 2206 00, 2207, 2208, 2209 00 제외)	주류, 음료, 식초
23 (2302 40 100 0, 2309 10 제외)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 동물용 조제 사료
24 (2402, 2403 제외)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5 (2501 00 91, 2529 21 000 0, 2529 22 000 0 제외)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7. (통관) 화훼류제품 반입 규정

* 출처 : 무르만스크 세관 (2017.2.27)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러시아 세관은 절화 및 화훼류제품의 관세동맹 반입절차에 대해 주의 환기시킴

- 절화와 화훼류제품은 빨리 상할 수 있는 특수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로 세관관리를 거치게 됨
- 이러한 상품은 검역유해생물체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관리를 받아야 하며 수출국의 전권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있을 시에만 국경 통과가 가능함
- 패키지에 있는 라벨링에는 제품명, 제품 원산지국가, 수출업체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
- 상업적 성격의 모든 화훼류 로트는 식물위생증명서가 있을 시에만 반입 가능함
- 사적인 용도의 경우, 생화 절화 부케 1-2개는 그 속에 검역해충들이 없을 시에 국경식물위생관리가 조직되어있는 검문소에서만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개인에 의해 반입 가능함
 - 국경검문소에서 승객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레드라인(세관 신고할 것이 있을 시 지나가는 선)을 따라 지나가야 하며 세관관리 시작 전에 국경식물위생관리를 통과해야 함
 - 절화에서 위험한 해충이나 식물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발송국으로 반송되거나 압수되며 상품 소유주의 비용으로 폐기됨
 - 식물위생관리 전문가들이 절화 부케의 반입을 허가할 경우 세관관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입되는 절화 부케는 면세반입상품 기준(1,500유로, 50kg) 내에서 산정하며 부케 가격은 구입영수증으로 확인함